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0,309,996	15,909,300
일반회계	499,073,087	14,972,193
특별회계	31,236,909	937,107
기타특별회계	31,236,909	937,107
상수도특별회계	14,550,831	436,525
자활기금특별회계	44,293	1,3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3,935	20,818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309,155	129,275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55,287	4,659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8,375,408	251,262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108,000	93,2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53,77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8억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